

의안번호	제 812 호
의 결 연 월 일	2021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
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최경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8월 25일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경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1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8월 25일
발 의 자 : 최경천, 박성원, 김국기,
김영주, 이수완, 임동현,
정상교 의원

1. 제안 이유

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,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‘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’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함 (안 제5조)
 - 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
 -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
- 나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(안 제6조)
- 다. 기타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
- 나. 비용추계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자치과
- 라. 입법예고: 2021.8.19.(목) ~ 2021.8.24.(화)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보호관찰 대상 학생” 이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학업중단” 을 “학업중단 예방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
4.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

제6조제1항 중 “교육감은” 을 “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및” 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충청북도지방경찰청” 을 “충청북도경찰청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“보호관찰 대상 학생” 이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.</u></p>
<p>제5조(시행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<u>학업중단</u>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제5조(시행계획 수립) ① ----- ----- <u>학업중단 예방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</u>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4. <u>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</u></p> <p>5. ~ 7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p>
<p>제6조(재정지원) ① <u>교육감은</u> 청소년 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</p>	<p>제6조(재정지원) ① <u>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및</u> ----- -----</p>

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충청북도, 충청북도지방경찰청, 청소년육성단체, 대안교육기관 등과 「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실무협의회」를 구성·운영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
----- 충청북도경찰청 -----

-----.

관계 법령

□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7664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28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1. 성격장애나 지적(知的)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

2. 학업 중단 학생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2. 3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2. 3.>

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2. 3.>

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, 교육감은 이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2. 3.>

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2. 20., 2021. 3. 23.>

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<신설 2016. 12. 20., 2021. 3. 23.>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3. 23.] [법률 제17974호, 2021. 3. 23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4. 21.] [법률 제17505호, 2020. 10. 20., 타법개정]

제3조(대상자)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(이하 “보호관찰 대상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

2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
3. 「형법」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

4.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
 5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- ② ~ ③ 생략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조례안 제5조에 따라 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 사업과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고, 안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.